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발의연월일 | 2024. . . |
| 발 의 자 | 김영길 의원 외 18명 |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길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
|----------|--|

발의연월일 : 2024. . .

발 의 자 : 김영길·김근한·김낙관·김민성
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
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
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
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19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외에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농촌진흥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 및 농업인관련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 다. 농촌진흥사업 지원(안 제4조)
- 라.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안 제5조~제7조)
- 마.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농촌진흥법」 제2조, 제5조, 제15조, 제19조, 제26조
- 2)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부서검토: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의견제출(붙임)

다. 기 타: 없음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농업인관련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연구, 교육, 정보교환 및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관련단체 등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미시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인관련단체 등은 농촌진흥사업 및 지역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시장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및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농촌지도사업)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인관련단체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설·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술용역)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등 농촌발전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농업인 및 농업인관련단체,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마.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

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 및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①~③ (생략)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관련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⑤~⑥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농촌지원과

| 조 례 명 |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진흥법」 제2조, 제5조, 제15조, 제19조, 제26조▪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시장 및 농업인관련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농촌진흥사업 지원(안 제4조)○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안 제5~7조)○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및 포상(안 제8조~9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근거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소요예산 : 약 87억원 (2024년 예산 반영) <p>※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예산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p>* 「2023년도 법제업무편람」 50p 비용추계서 첨부기준 참조</p> | |